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26호 2017. 9. 20.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7-151호 정선군 하천구역(한강, 오대천) 지형도면 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7-93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
- 정선군 공고 제2017-946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 정선군 공고 제2017-94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17-959호 아우라지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27
- 정선군 공고 제2017-963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29
- 정선군 공고 제2017-980호 지장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 및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확정 공고.....36
- 정선군 공고 제2017-986호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7
- 정선군 공고 제2017-987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5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7-151호

정선군 하천구역(한강, 오대천) 지형도면 고시

1. 「하천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중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미등재 구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니다.

2017년 09월 07일

정 선 군 수

가.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한강(지방하천), 오대천(지방하천)

나. 하천구역 지정일

- 한 강 : 1992. 01. 10
- 오대천 : 1997. 04. 14

다. 고시사유 : 기존의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함

라. 하천 구간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편입면적 (㎡)
계		2 개소	2,715,853
한 강	지방하천	시점 :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69 ~ 종점 :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26	1,745,293
오대천	지방하천	시점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14 ~ 종점 :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857	970,560

마. 편입토지 세목조서 : 첨부 조서 참조

바.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정선군청 안전건설과 비치)

● 하천구역 편입토지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01. 한 강									
계				59필지			1,745,293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8-1	천	2,245	2,245		국(건설부)
2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	임	4,959	4,730		국(기획재정부)
3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1	도	4,034	313		국(국토교통부)
4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3	천	10,340	10,340		국(기획재정부)
5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10-1	천	749	749		국(건설부)
6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3	전	8,654	8,654		국(환경부)
7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4-2	천	3,983	3,947		국(환경부)
8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6-1	천	1,625	1,625		국(환경부)
9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7-1	천	6,129	6,129		국(건설부)
10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8	전	1,778	1,778		국(건설교통부)
1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59-1	천	1,064	1,056		국(건설교통부)
12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17-16	천	1,262	1,251		국(건설교통부)
13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17-19	천	281	281		국(건설교통부)
14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40-1	천	59,256	59,256		국(건설부)
15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4-3	제	5,628	5,628		국(건설교통부)
16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5-3	제	175	175		국(건설교통부)
17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5-5	천	63	63		국(건설교통부)
18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5-6	천	24	24		국(건설교통부)
19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6-7	천	38	38		국(건설교통부)
20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6-8	천	388	388		국(건설교통부)
2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6-9	천	84	84		국(건설교통부)
22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8-2	천	389	389		국(건설교통부)
23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49-1	천	1,590	1,590		국(건설교통부)
24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78-1	천	76,921	73,824		국(건설부)
25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4-1	천	33,267	32,930		국(건설부)
26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4-2	임	2,988	1,018		국(환경부)
27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82-1	천	6,632	6,632		국(건설교통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28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98	임	12,567	3,519		국(환경부)
29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98-1	천	226	226		국(건설교통부)
30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14-2	천	42,259	42,110		국(건설부)
3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58	천	967,399	967,399		국(건설부)
32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95-1	도	3,277	188		정선군
33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95-4	도	1,470	784		정선군
34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96-2	전	1,191	1,191	경기도 오산시 *동 ***-**	박*애
35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97	전	1,994	1,994		국(환경부)
36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97-4	전	300	258		국(환경부)
37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24-2	도	110	110		정선군
38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26-2	전	207	20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리 ***-*	강*희
39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70	전	279	279		국(환경부)
40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70-1	도	161	120		정선군
4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72-1	도	2,454	2,219		국(국토교통부)
42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29	전	1,329	1,317		국(건설부)
43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29-8	구	1,006	1,000		국(농림축산식품부)
44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30	천	1,203	1,196		국(건설부)
45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31	천	2,060	2,026	신동읍 **리 ****	이**성
46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33	전	2,757	2,728		국(건설부)
47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65	천	819,317	420,633		국(건설부)
48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65-15	천	4	4		국(건설부)
49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65-16	천	1,471	1,330		국(건설부)
50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21-2	임	164	164	정선읍 **리 ***	유*철
5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25-1	구	1,389	111		국(농림축산식품부)
52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25-3	도	157	66		정선군
53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49-1	구	13,987	113		국(농림축산식품부)
54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6	도	1,586	7		정선군
55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7	도	3,917	3,917		정선군
56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8	도	23	23		정선군
57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10	도	104	104		정선군
58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80	천	4,972	4,972		이상용
59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81-1	천	59,841	59,841		국(건설부)
02. 오대천									
계				70필지			970,560		
1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2	도	2,367	144		국(건설부)
2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10	천	473	467		국(건설교통부)
3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11	천	94	94		국(건설교통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17	전	511	176		강원도
5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18	천	5	5		국(건설교통부)
6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58-1	철	1,271	265		국(국토교통부)
7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59-1	도	120	13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로 **_*	신*희
8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59-3	천	91	91		국(건설교통부)
9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5-1	천	24,600	24,221		국(건설부)
10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6	천	450,728	13,069		국(건설부)
11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290-1	천	29,562	12,013		국(건설교통부)
12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19-1	도	4,050	29		국(기획재정부)
13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20-1	천	461	461		국(건설교통부)
14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27-3	천	899	894		국(건설교통부)
15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29-11	천	213	208		국(건설교통부)
16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45-2	도	2,587	531		국(기획재정부)
17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47-2	도	339	265		국(기획재정부)
18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47-3	도	720	38		국(국토교통부)
19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47-4	도	657	30		국(국토교통부)
20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9-3	전	1,002	809	정선군 북평면 **리	이*갑
21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9-6	전	99	99		국(국토교통부)
22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30-12	임	2,271	1,738		국(기획재정부)
23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8	천	1,552	1,240		국(건설교통부)
24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8-3	도	459	430		정선군
25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9	임	303	222	서울 금천구 **동 ***_*	이*화
26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9-1	도	1,676	436		국(건설부)
27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51-5	구	89	65		국(건설부)
28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92-2	구	116	24		국(건설부)
29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9	천	601,369	315,880		국(건설부)
30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9-2	도	5,253	953		국(건설부)
32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9-10	도	72	72		국(건설부)
33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24-1	도	919	871		정선군
34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100-9	임	1,539	2		국(국토교통부)
35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107-3	도	2,258	329		강원도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36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362-1	천	167,977	162,473		국(건설부)
37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14	전	623	575	북평면 **리 ***	손*옥
41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14-1	도	1,607	5		국(건설부)
42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14-5	전	72	72		국(국토교통부)
43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17-1	도	1,208	14		국(기획재정부)
44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46-6	천	78,906	62,166		국(건설교통부)
46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1	천	3,204	3,195		강원도
48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3	도	101	51		강원도
49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3-1	구	2,436	58		국(건설부)
50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6-2	도	155	126		강원도
51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01-1	도	3,981	1,013		국(건설부)
52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01-2	도	780	31		국(건설부)
53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01-9	도	541	57		국(건설부)
54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37-1	천	259,218	239,638		국(건설부)
55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37-10	도	692	128		국(건설부)
56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340-1	도	2,023	1,368		정선군
57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340-11	도	1,594	126		정선군
58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341-1	도	3,112	1,001		국(건설교통부)
59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342-1	도	2,500	572		정선군
60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342-2	도	3,737	3,118		정선군
62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	도	6,710	1,291		강원도
63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4	임	7,823	7,823		국(건설교통부)
64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5	임	51,129	11,006		국(산림청)
65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0	임	11,821	469		국(건설교통부)
66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1	도	2,751	128		국(건설교통부)
67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6	임	72,498	3,440		국(건설교통부)
68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20	임	1,302	1,302		국(건설교통부)
69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21	임	11,769	1,422		국(건설교통부)
70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14	천	92,752	91,708		국(건설교통부)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93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
- 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조항과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 가. 용어가 모호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함.
 - 1) 도로명의 사용 의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영 제 15조제3항 또는’ 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 3)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준 및 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 10일 이내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 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 생활화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 생활화촉진을 => 사용 촉진을
 - 생활화 => 사용
- 다.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함.(안 제2조, 제20조제3항)
- 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안 제15조)
 - 법 제4조 => 법 제4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전 화 : 033-560-2183
- 팩 스 : 033-560-22596
- 이메일 : lcn03137@korea.kr

정선군 공고 제2017 - 946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2. 개정이유

-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향토학사 입사생 자격 제한 용어 정리(안 제5조 제2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 추진(안 제6조 제2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전 화 : 033 - 560 - 2185
- F A X : 033 - 560 - 2141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5. 기타 참고사항

-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국·립병원 발행분에 한함)”를 “건강진단서”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생략) 2. <u>전염성 질환</u>이 있는 자	제 5 조 (자 격 제 한) ----- -----. 1. (현행과 같음) 2. <u>감염성</u> -----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 신청서(별지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강진단서(보건소,건강관리협회,국·립병원 발행분에 한함) 4. 기타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증명서) 〈신 설〉	제6조(입사신청)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u>건강진단서</u>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u>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1. <u>국가유공자 확인원</u> 2. <u>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u> 3. <u>장애인증명서</u>

【별지 서식】

향토학사입사신청서

신 청 자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과 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동(읍·면)			
	년	중 학 교	시(군) 동(읍·면)			
	년	고등학교	시(군) 동(읍·면)			
친 권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		직위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①

친권자 성명 ①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성적증명서 1부.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1부. 3. 건강진단서 1부.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발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⑥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17-94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개발행위 허가(태양광 등)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 사전예방 대책강구(안 제21조)
 -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안제1항제2호)
 -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및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 계획기준(부지조성) 준용 (안제3항)
 -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 기준마련 (안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취소 사유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 삭제 (안 제27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안 제47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 상위법령에 맞게 당연직 위원 규정 조항 삭제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성별 기준 반영(안 제58조제3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상위법령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조례개정

(안 제58조제6항)

- 시행령에서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한 군계획 조례 제31조제1항 별표 일부 정비

- 별표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7. 09. 14. ~ 2017. 10. 1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다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 하는 일단

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 회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

제2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 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47조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표 14 제14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12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5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16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 략) ②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6조 ----- ----- ----- ----- -----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u>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u>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 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u>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 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다.

1. 2년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삭 제)

① (삭 제)

1. ~ 4. (삭 제)

② (삭 제)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 제15조에 -----
-----.

2. ~ 5 (생 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5. ~ 14. (생 략)

<신 설>

제58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5.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u>두되,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자가 된다.</u> ⑦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둘 수</u>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112조(간사와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선군 공고 제2017-959호

아우라지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일원의 아우라지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정 선 군 수

1. 사업위치: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지 조성사업
- 명 칭 : 아우라지 관광지

3. 지 정 면 적: 기정 122,850㎡ ⇨ 변경 122,244㎡(감 606㎡)

4. 조성계획 면적: 기정 122,850㎡ ⇨ 변경 122,244㎡(감 606㎡)

◦ 변경 내용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증, 감	당초	변경	증, 감
총 계	122,850	122,244	감606	2,306	2,306	-
공공편익시설	29,479	29,535	증56	251	251	-
상가시설	627	627	-	106	106	-
운동·오락시설	1,629	1,629	-	-	-	-
휴양·문화시설	36,423	36,092	감331	1,949	1,949	-
기타시설	54,692	54,361	감331	-	-	-

5. 변경 사유

- 정선군 고시 2016-910호(2016. 10. 25.)에 의거 여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계 조정 및 토지이용 면적 변경

6.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033-560-2363)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7.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서면제출

정선군 공고 제2017-963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2017년 정부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관련조항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

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정(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으로" 개정

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정비(안 제7조 제1항)

○ 각 호의 내용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하는 내용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기관 : 정선군청(세무회계과)

- 우편번호 : 26131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번호 : 033) 560 - 2271
- FAX : 033) 560 - 2587
- E-mail : kd983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u> ----- ----- -----.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3명 이상 5명 이</u>	제2조(위원의 정수) ----- ----- <u>4명으</u> ----- -----.

하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신 설>

1. (생 략)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신 설>

5. (생 략)

② 삭 제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

-----.

1. 결산개요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 6. 금고의 결산
- ② 삭제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 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 2017.7.26.>

정선군 공고 제2017 - 980호

지장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 및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확정 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7-105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확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용 역 명 : 지장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 및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정선군 지장천(정선읍 가수리 ~ 남면 광덕리)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 업 량 : L=2.0km, A=224.76km²
- 공고기간 : 2017. 09. 19. ~ 09. 25.(7일간)
- 세부사항 : 첨부문서 참조

정선군 공고 제2017-986호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 위임사실을 명시하고
-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상위 법령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19. ~ 2017. 10. 1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221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조례 제 호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법예고”를 “예고”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보·도보·신문·방송 또는 컴퓨터통신에”를 “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과”를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선군자치법규(정선군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삭 제></u>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u>제정·개정 또는 폐지</u> 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u>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u>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기타 군민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

-----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 -- 각호의 어느 하나 예고-----.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 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 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신 설>

제5조(입법예고문)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군보 발간 일부 터 5일이내에 입법예고기 간이 만료되어 입법예고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도보·신문·방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① -----
- 각 호-----.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

③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
----- 법
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 -----.

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다. -----

-----.

정선군 공고 제2017-987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공포기관에 따른 공포방법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 상위 법령과 일치
: 20일→30일(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19. ~ 2017. 10. 1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221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조례 제 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를 “조례·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규칙등”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으로, “고시문예”를 “공고·고시문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제2항 중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로, “얻은 뜻을 기재하고”를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로, “그”를 “직인을 찍고 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뜻을 기재하고”를 “사실을 적고”로, “일자”를 “날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쳐서 공포한다”를 “붙여서 공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규칙별”을 “조례·규칙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포일등)”을 “(공포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을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로, “규칙등을”을 “규칙 등을”로, “발행된날”을 “발행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규칙등”을 “조례·규칙등”으로, “2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u>		<u>정선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u>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조례 · 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u> ----- ---		
제2조(전문) <u>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u>		제2조(전문) <u>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조례 · 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 · 규칙 등” 이라 한다)--</u> <u>공고 · 고시문에는 --.</u>		
제3조(조례)① <u>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뜻을 기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u>		제3조(조례) ① <u>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u>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u>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u>		②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 ----- <u>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u> --- - <u>직인을 찍고 그 -----.</u>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제4조(규칙) -----
사실을 적고 -----
----- 날짜-- .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 -----
--- 붙여서 공포한다.
② ----- 조례·규칙별-----
----- .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 규칙 등을 ----- 발행된 날 -----
----- .

② -----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
 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야 한다.

----- 조례·규칙등-----

 ----- 30일-----
 -----.